

목차 Contents

1. 총론

1) 공공구매 매뉴얼 발간 배경	2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해	3
- 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	
3) 2013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가능품목 안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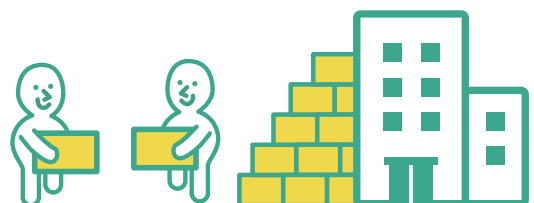
2. 공공구매 계약 제도 및 실무 안내

1) 공공구매 계약제도 이해	6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12
3) 나라장터 제도 이해 및 등록방법 등 실무	14
4) 사파이어몰 소개	17
5) 우선구매제도 사업아이템 개발과 홍보전략	18

3.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계약 사례

4. 첨부문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종별 분류	21
-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 실적 및 개선과제	22
- 공공조달 업무 흐름도	24
- 공공구매 관련 법규 정리	28
- 서울특별시사회적기업개발센터 소개	36
(별첨)	38
- 2013년 서울시(본청, 자치구, 투출기관) 우선구매 가능 품목 상세	
- 사파이어몰 매뉴얼	
- 나라장터 이용 사용자 매뉴얼 (PDF 문서)	



1. 총론

- 1) 공공구매 매뉴얼 발간 배경
-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해
 - 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
- 3) 2013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가능품목 안내

1) 공공구매 매뉴얼 발간 배경

● 사회적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시장 기회의 확장’이며, 이 중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이 전략적으로 시장 진입을 고민해야할 부문이 연간 100조원(GDP 8%)으로 추산되는 공공구매 시장임

● 서울시의 구매 총금액(시, 자치구, 출연기관 포함)도 4조 8천 9백억원(‘12년 서울시 발표 기준)으로 추산되는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구매증대를 통해 경쟁력제고 및 지속적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서울시는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2012.5.24)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 약 자기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반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약자기기업 제품구매 확대 및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공공구매 목표제 추진(‘12년 5백 억 원) 등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우호적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과제 등 대두되고 있음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과정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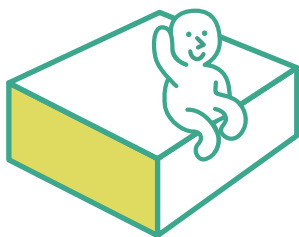
서비스 분야 용역 다수 누락, 홍보 부족, 특정 업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발생 등의 문제가 도출됨

각 당사자별 저해 요인

[사회적경제 요인] 공공구매 시장 및 제품 정보 부족, 자본조달 한계로 규모 있는 설비투자 부족, 사회서비스업종 편중 등
[조달 공공기관 요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제품 정보 부족, 수의계약 불가 등 조달계약법 상의한계, 최저가입찰제 적용 및 재무제표 중심의 기업평가시스템 등으로 인한 중규모 이상 기업 선호 등

● 이에 공공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칭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구매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함

● 현재 시점에서도 조성되고 있는 공공구매 시장 진입에 실기하지 않기 위해, 우선 임시 매뉴얼을 금번 내용으로 발간하며, 이후 보완작업 등을 거쳐 2013년 상반기 중으로 판매자용 매뉴얼과 공공기관용 매뉴얼을 발간하여 설명회 등을 거쳐서 배포할 예정임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해

■ 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중

* 공공기관의 범위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예: 중소기업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지정 현황: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 참조)

● 현재 우선구매에 관한 계획은 보통 액수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함. 즉, 비율을 단순히 액수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품목과 업종 등 사회경제조직의 실질적 현황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법령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

● 서울시 우선구매 제도 대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등 사회경제조직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우선구매 제도 추진 현황

-서울시는 지난 해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공공구매 목표제를 추진한 바 있음

-‘13년에는 공공구매 목표 제도를 기존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등 사회경제조직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방침을 수립 중에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용상의 이슈 ¹⁾

● 구매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공공기관의 구매수요에 적합한 사회경제 제품 절대적으로 부족. 공공기관의 주요 구매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현황 및 수요 자료가 없어 맞춤형 생산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자본금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역량 부족. 대규모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 기업이 부족한 상황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담당자의 인지도 미흡. 사회경제 기업 제품 분류, 물품 검색, 제품정보 확인 등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상시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음. 구매 담당자들이 사회경제 기업 제품 설명회나 교육을 받은 거 없어 사회경제 기업 제품 및 구매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유통상 한계로 사회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편의성 부족.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청)을 많이 이용하지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회 경제 기업 제품의 수가 한정적이고, 구매가능한 제품이 있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 주문이 어려움

1) 함께일하는세상(주) 우선구매교육 자료 중 발췌





■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운용상 한계

- 일반경쟁입찰 : 불특정 다수 희망자들이 경쟁하는 일반경쟁입찰은 대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아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선정되기 어려움
-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제한경쟁입찰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 현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가격, 납품 실적,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 경제적 가치 위주로 구성. 사회적경제 기업이 산출 하는 가치인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연관이 있으나,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음.

2) 2/18 서울시사회적경제과 최종 취합, 전달본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각 사업소별 우선 구매 목표 전체 금액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만을 전제하는 계획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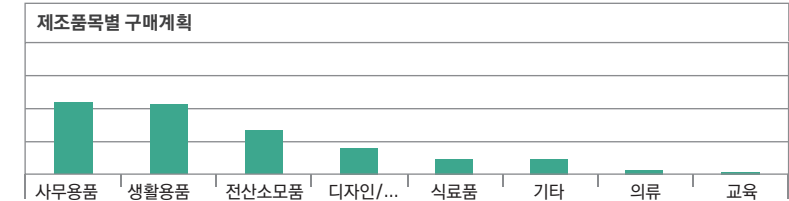
3) 2013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가능품목 안내 ²⁾

(각 부처별, 자치구별 상세 목표는 첨부 참고)

■ 업종별

● 제조군 (단위 : 천원)			
업 종	품 목	금 액	비 율
사무용품	복사용지/부서비품/문구류	6,523,676	24.1%
생활용품	화장지/세제/종량제봉투 등	6,410,012	23.7%
사무용품/식료품 (자치구소방서)	사무용품/청소용품/식자재	6,048,977	22.4%
전산소모품	프린터 드럼/토너/잉크 등	2,796,655	10.3%
디자인/인쇄	명함/민원서식/홍보물 등	2,381,506	8.8%
식 료 품	커피/차/다과/공정무역제품	1,334,624	4.9%
기 타	기타/미정	1,273,044	4.7%
의 류	근무복/작업복/신발 등	208,380	0.8%
교 육	교재/매뉴얼/가이드북 등	83,217	0.3%
합 계		27,06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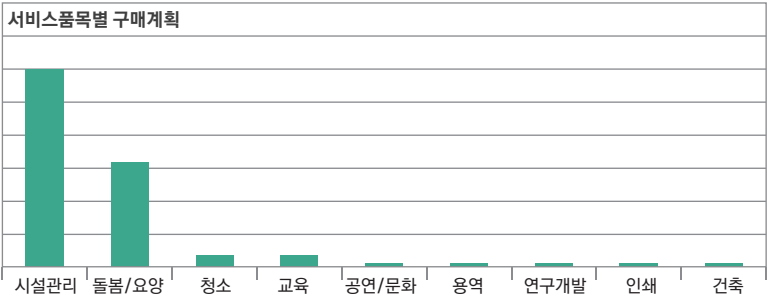
- 제조군의 업종 중에서는 사무용품/생활용품/전산 소모품 등 사무실 비품의 비중이 높음
- 세부품목 중에서는 복사용지(사무용품), 종량제 봉투(생활용품), 프린터 토너(전산 소모품)이 각 업종 분야의 금액 대부분을 차지함
- 25개 자치구 소방서는 사무용품/청소용품/식자재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로 계획을 산정함



● 서비스군 (단위 : 천원)			
업 종	품 목	금 액	비 율
시설관리	등산로 정비/안전관리	60,756,494	59.99%
돌봄/요양	노인돌봄바우처/방문요양 등	32,549,000	32.14%
청 소	청소/소독/방제	2,262,204	2.23%
교 육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1,765,599	1.74%
공연/문화	축제/문화예술공연/행사운영	883,650	0.87%
옹역 (공공근로)	각종 옹역비	827,890	0.82%
연구개발	공모사업	817,094	0.81%
인쇄출판	자료집 제작	522,354	0.52%
건축(인테리어)	인테리어/시설보수	511,056	0.50%
기 타	미 정	286,138	0.28%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66,821	0.07%
도 시 락	밀반찬 배달 사업	11,074	0.01%
보 험	자동차 보험	4,000	0.00%
택 배	운송/배달	3,268	0.00%
임 대	대관료	3,000	0.00%
세 탁	활동복 세탁	2,580	0.00%
합 계		101,272,222	



- 시설관리부문(등산로 정비/하천생태복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둘레길 조성 등)을 제외하면 서비스 분야의 구매 목표 금액은 40,515,728천원임
- 돌봄/요양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우선 구매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됨



■ 사업소별

● 요약 (단위 : 천원)					
	본 청	사 업 소	자 치 구	투자출연기관	합계
물 품	9,874,363	4,405,348	9,931,188	2,849,192	27,060,091
서 비 스	94,282,400	1,421,964	4,804,038	763,820	101,272,222
합 계	104,156,763	5,827,312	14,735,226	3,613,012	128,332,313

* 자치구 중 성동구, 금천구는 미취합

● 사업소별 전체 계획

소 속	부 서	금 액	비고
본 청	도시교통본부	53,152,829	
	푸른도시국	39,898,195	
	언론담당관	4,000,000	
	소방재난본부	2,789,804	
	기후환경본부	2,444,59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41,458	
	도시안전실	334,800	
	행정국	193,203	
	재무국	118,528	
	복지건강실	68,772	
	경제진흥실	64,980	
	주택정책실	55,100	
	서울혁신기획관	31,266	
	정보화기획단	24,330	
	교육협력국	15,000	
	정보화기획담당관	9,000	
	도시계획국	8,500	
	민방위담당관	6,300	
사 업 소	마곡사업추진단	100	
	소방재난본부	3,259,17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969,460	
	상수도사업본부	453,517	
	교통방송	70,722	
	인력개발원	39,000	
	보건환경연구원	22,740	
	강서도로사업소	6,300	
	차량정비센터	5,400	
자 치 구	아동복지센터	1,000	
	강남구	2,037,794	
	성북구	1,514,002	
	강동구	1,117,707	
	서대문구	1,115,513	
	동대문구	1,000,000	
	관악구	986,480	
	구로구	842,519	
	은평구	829,808	
	강서구	822,550	
	노원구	614,041	
	서초구	605,222	
	도봉구	536,500	
	종량구	500,488	
	강북구	485,023	
	영등포구	481,000	
	용산구	315,160	

자 치 구	동작구	314,337	
	송파구	262,059	
	종로구	223,205	
	마포구	77,203	
	중구	28,330	
	양천구	21,165	
투자출연기관	광진구	5,120	
	서울메트로	714,552	
	농수산물식품공사	540,119	
	도시철도공사	305,000	
	서울자원봉사센터	262,600	
	서울산업통산진흥원	236,300	
	서울의료원	199,369	
	서울문화재단	145,50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16,540	
	서울연구원	82,000	
	서울산용보충재단	66,000	
	서울시복지재단	64,5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5,250	
	서울디자인재단	39,282	
	서울시립교향악단	11,000	
합 계		128,33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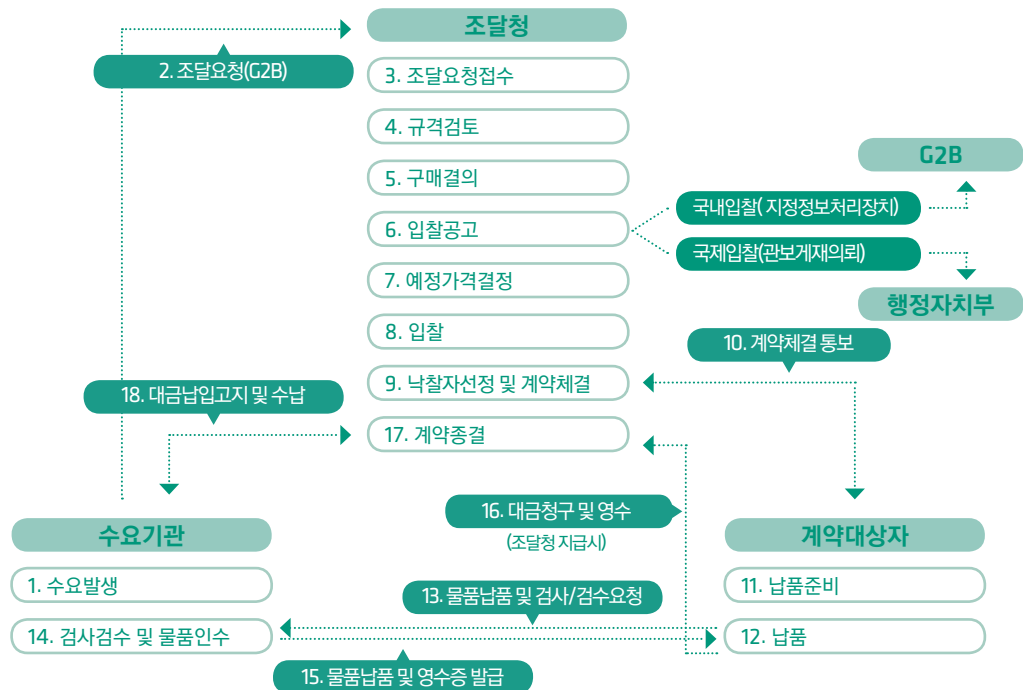
- 도시교통본부/푸른도시국(본청), 소방재난본부/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시설관리공단/서울메트로(투자출연기관) 등의 금액이 전체 계획 중 77.8% (99,779,209천원)의 비중을 차지함 (시설관리 품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

2. 공공구매 계약 제도 및 실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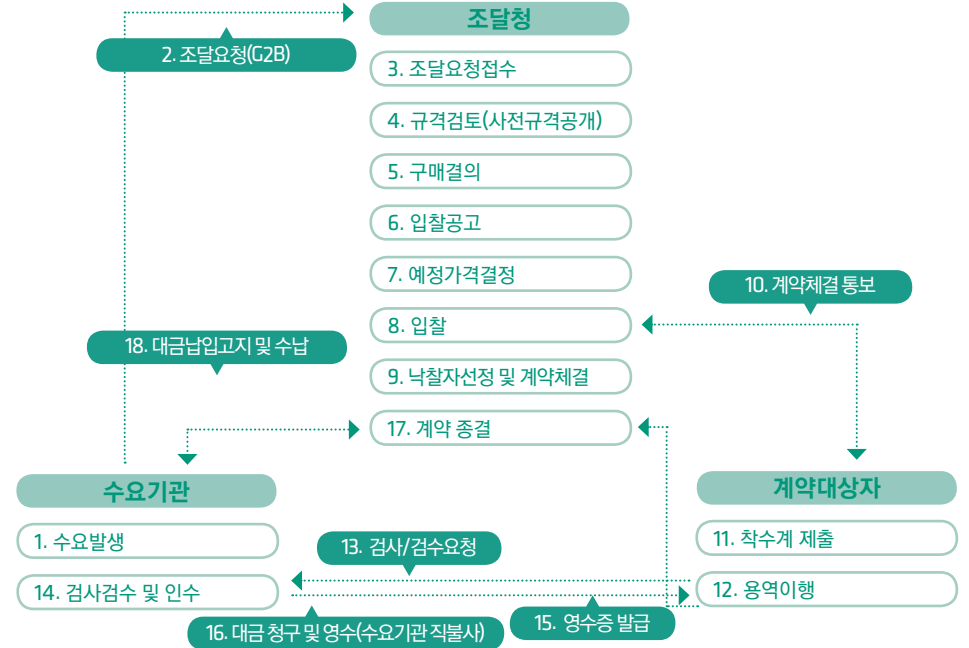
- 1) 공공구매 계약제도 이해
-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 3) 나라장터 제도 이해 및 등록방법 등 실무
- 4) 사파이어몰 소개
- 5) 우선구매제도 사업아이템 개발과 홍보전략

1) 공공구매 계약제도 이해

- 공공구매 계약 프로세스(조달 체계)
- 물품



● 용역서비스



● 시설공사



■ 분류 ³⁾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문건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등 나. 용역계약 . 일반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관리/청소/경비 용역, 육상운송 용역, 전시/행사대행 용역, 광고/디자인 용역 등 .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다.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 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종합계약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최저가 낙찰제, 희망수량입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계약 체결 방법 중 주요 이슈 관련 개요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게 하는 방법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 요건	비고
1.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해당계약목적물의1배이내 (50억미만공사 0.7배이내) ○ 규모·양제한 예외·금액제한
	물품 용역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3.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4.지역제한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10억원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추정가격3.8억원미만사·도(울산제외)일반용역·물품 추정가격5.0억원미만울산,시·군·구일반용역·물품 추정가격 2.5억원미만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1.5억원미만 안전진단용역	
5.설비 제한	물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물품납품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재무상태	공통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의 각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1) 동일실적, 2) 기술의 보유상황, 3)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4) 지역제한, 5) 설비제한,

6)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7)물품의 납품능력, 8) 중소기업자, 9)재무상태

< 예 외 >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4)와1), 4)와2) 또는 4)와 8)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제도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와 중소기업 경영기반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게 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함

*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 ⁵⁾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함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 이하

● 수의 계약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⁶⁾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종합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의함(전자공개수 의) ○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의하지 않을 수 있 는 경우(아래 참조)
1인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 는 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 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 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전제요건

-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 대상

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①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 구매 등 물질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②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③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
약하는 경우 환한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④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 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⑥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전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예외사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성북구 정책분석 보고서 “성북구 공공조달의 사회적책임성 강화방안 모색” 참조

(참고)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수의 계약⁷⁾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2.9) 제10조의5(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고시금액이하 물품,제조,구매,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천만원이하)에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과 10인 미만의 기타 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기타 사회적약자기업은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시 우선계약 체결대상이 될 수 있음

8) 서울시 2011 계약업무 매뉴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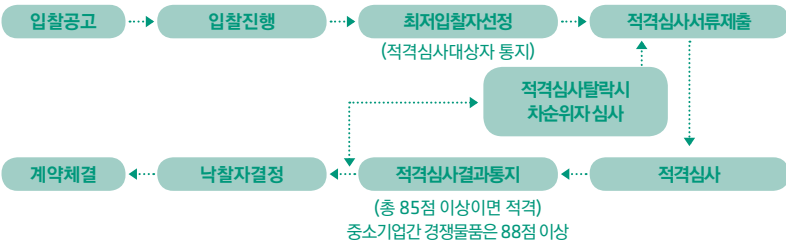
■ 낙찰자 결정방식⁸⁾

[규모별 낙찰자 결정방식]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최저가	30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선택적용)
적격심사	300억원 미만	모든 용역	2.5억원 이상
협상계약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최저가치낙찰제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단계경쟁	-	단순노무 제외	모든 물품
턴키/대안	300억원 이상 중 심의위 결정	-	-
기타	기술공모	설계공모 등	종합낙찰제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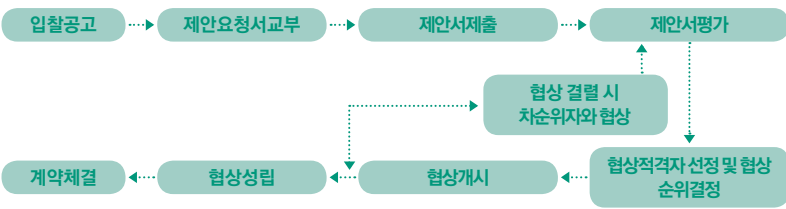


● 최저가 낙찰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하는 제도



● 희망수량입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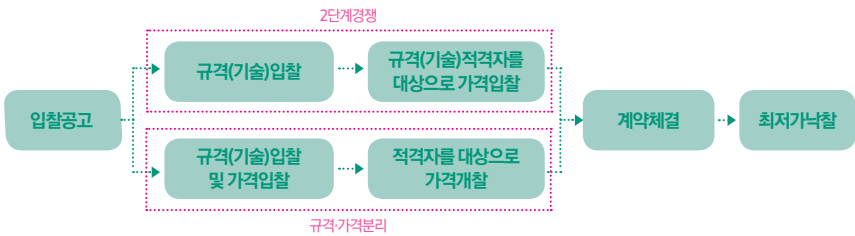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 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2단계 입찰

용역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물품입찰 등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규격을 먼저 개봉한 다음 가격 개봉)



● 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 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최적가치 낙찰제

- 지방계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 협상계약 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물품·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공사
- ①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②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 ③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등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구 분	공고기간	긴급시 공고기간	비고
추정가격 10억원이상	40일	10일	
추정가격 10억 미만	20일	상동	
추정가격 1억미만	10일	상동	

[협상계약 체결 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항목점수	세부점수
우수기업	여성기업지원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2.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6	0.2 0.2 0.2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 인 고용 촉진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0.6	0.3 0.3 0.2
	사회적기업	1.사회적기업 2.예비사회적기업	0.6	0.6 0.3
	신규채용	1.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모범납세자 등	1.모범납세자 2.노사문화우수기업	0.6	0.3 0.3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중소기업(단독수급) 2.공동수급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30%이상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0%이상	1.5	1.5 1
	서울소재 중소기업지원	1.서울소재 중소기업(단독수급의 경우) 2.공동수급의 경우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30%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10%	1.5	1.5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당해사업 관련 신규채용 인력채용시 -월 급여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신 규직원 채용시 1명당 0.2점의 가점부여	2	2

[협상계약 체결 시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20	
	주관적 평 가	응역 물품	60	
		공사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구매대상 품목 및 제품 확인

● 온라인의 경우

- 사회적기업 상품소개 사이트 e-store 36.5(www.estore365.kr) 접속

(1) 상품 카테고리별 찾기 - 메인화면 '전체 카테고리' 섹션 또는 상단 '상품소개' 메뉴 클릭

(2) 상품 정보검색으로 찾기 - 우측 상단 통합검색 창에 상품명을 입력하거나 상단 메뉴들 중 정보검색 > 상품검색에 상품 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역검색, 인증유형)로 검색

(3) 사회적기업 찾기 - 상단 메뉴들 중 기업검색과 지역검색을 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1) 사회적기업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경우 - 상단 메뉴 사회적기업 정보 > 사회적기업리스트 >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경우 - 상단 메뉴 사회적기업 정보 > 사회적기업리스트 > 개요집 다운로드

(3) 카테고리별 상품 확인할 경우 - 상단 메뉴 알림마당 > 문서자료 > 착한소비 365 검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쇼핑 카테고리 > 대분류 > 중분류 > 원하는 기업 선택 후 인증 확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확인 후 구매

- 이로운몰(http://www.erounmall.com/)

우측 메뉴 중간 KEYWORD에서 '사회적기업' 클릭

- G마켓(http://www.gmarket.co.kr/)

검색창에 '사회적기업관' 작성 후 검색. 제품명에 '사회적기업관'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영수증 첨부 등으로 인정 가능.

● 오프라인의 경우

Store 36.5 (북합형 판매공간)	Mini-Store 36.5 (Shop in shop)
동작점 (서울 동작구 이수역 13번 출구)	행복한 백화점 내 정책매장 (서울 목동)
	아름다운가게 안국점 (서울 종로)
노원점 (서울 노원구 노원역 4번 출구 통로)	아름다운가게 미아점 (서울 강북)
	아름다운가게 분당매점 (경기 분당)

■ 2단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의 경우

-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간접구매의 경우

- 공공기관이 용역(또는 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경제 물품(또는 용역)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경제간 물품(용역)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간접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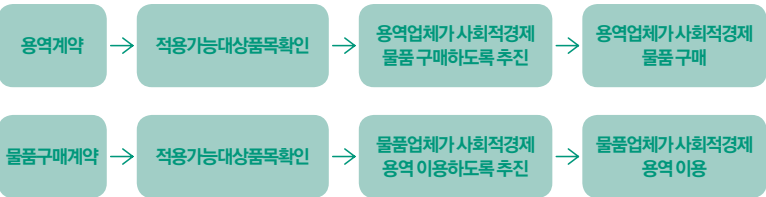


표 고용노동부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간접구매 절차 참조

●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계약제도를 활용(법령상 사회적기업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음)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 3단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 온라인의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쇼핑 카테고리 > 대분류 > 중분류 > 원하는 기업 선택 후 인증 확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확인 후 구매

- 이로운물(<http://www.erounmall.com/>)

우측 메뉴 중간 KEYWORD에서 '사회적기업' 클릭

- 기타 G마켓(사회적기업관)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

* **사파이어물 : 별도 소개 내용 참조**

● 오프라인의 경우

- 오프라인 판매공간인 복합형 판매장 'Store 36.5' 또는 숍인숍 'mini-store 36.5'에 문의하여 구매

※ 복합형 판매장 Store 36.5' 또는 숍인숍 'mini-store 36.5'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

3) 나라장터 제도 이해 및 등록방법 등 실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해야 함.

■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음. (더 자세한 문익는 각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

1. 공인인증서 발급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 등록으로 부가세 포함 매년 11만원을 납부해야 함.

<필요서류> -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인증서 신청서(각 인증기관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 인감증명서)
- 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 구체적인 공인인증서 등록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문의

<공인인증기관 목록>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1577-8787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 : 02-531-1123~7

한국전자인증(www.crosscart.com) :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1566-2119

- 경쟁입찰과 같은 경우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인증서를 구매할 때 지문기계(지문기계도 큰)까지 동시에 구매해야 함. 구매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또는 구매확인증을 출력 후 우선 보관(아래 2단계에서 조달청 방문 시 지참 필수) 해야 함.

2.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규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입력한 후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송신. 그 후 시행문을 출력해 안내 내용에 따라 시행문과 관련 제출 서류를 송신한 지방조달청에 우편 발송 및 방문 제출.

<물품제조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원본
 - 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업체만 해당)
 -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체만 해당)
 - 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사본(구비한 경우)
 -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사본(구비한 경우)
 - 제조물품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카달로그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 ※ 각 증명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증명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함.
- ※ 다만, 물품제조가 아닌 공급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 대표자(혹은 입찰대리인)는 조달청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 등록해야 하므로 지문 등록을 할 사람은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과 ②신분증을 필히 지참. 제품등록을 할 경우 직접 생산 증명서 대상 물품 여부를 중소기업 중앙회(1666-9988)에 먼저 확인해야 함.

3. 적정여부 검토 - 조달청 담당자

등록 담당자는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확정 등록.

-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으로 날인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 가능
- 한 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 등록이 불가하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4. 등록 승인 및 확인

등록 담당자는 신청서의 내용과 서류를 확인하여 모두 일치되는 경우 확정 등록.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 등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토록 업체에 안내. 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 가능함.

5. 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규 등록 메뉴로 들어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 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위의 5단계까지 완료하면 모든 업체 등록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 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등은 정부조달콜센터(4588-0800)로 문의 바람.

■ 다수공급자계약제도⁹⁾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

9) 출처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8092/xzmal/popup/mas/main.html>

<대상품목>

-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① 이 제도를 통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 :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②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 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100점을 만점으로 납품실적평가는 30점, 경영상태 평가는 70점.

납품실적평가 -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경영상태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4항 제 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 희망 자격을 제시하도록 함. (ex : L사의 공기청정기 10평형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원)

①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 이 때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 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②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ex : 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③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 ※ 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로 정함.
-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조달청에 사전협의가 필요.
-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 조달청 의무조달 범위

● 물품구매 대상 및 범위

구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국가기관	- 1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 임차, 대여 포함 - 단가계약된 물품	- 1억 원 미만의 물품 - 긴급구매물자(천재/지변 등) - 국방목적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 조달청장이 구매 위임한 경우 등 * 음·식료품류, 동·식물품류, 농·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차량용 유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포함)	- 단가계약된 물품	-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추정가격 2억 이상인 물품	-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 공사계약집행범위

국가기관		30억 원 이상(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은 3억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임의
	광역시	
	도시군	

4) 사파이어를 소개(www.482a.co.kr)

(SBA 사파이어물 설명자료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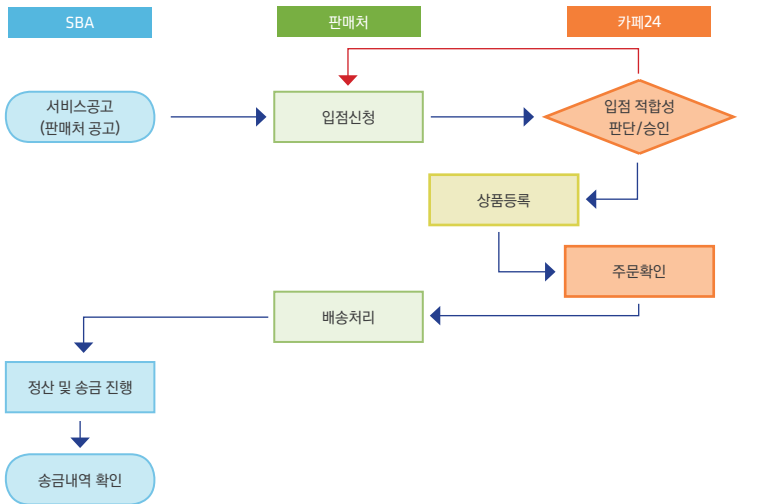


■ 개요

사파이어는 서울 소재 우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제품을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공공구매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사회적기업 전문 제품쇼핑몰로 2012년 10월 오픈하였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주관부서) : 판매처 입점공고
- 판매처(상품 공급사) : 입점을 원할 경우, 입점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카페24(업무 대행사) : 판매처 승인 및 쇼핑몰 관리

■ 업무 프로세스



- ①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이 입점 신청 공고를 진행
- ② 관련 내용을 확인한 판매처는 입점 신청서와 필요 서류(상품 이미지, 세부 규격)를 구비 후 카페24(업무대행사)에 전달
- ③ 입점 판매처의 신청이 적합한지,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심사 후 결과를 통보 (SBA 및 판매처)
※ 입점 승인 시 ID 및 P/W 등록, 입점 실패 시 사유를 확인 후 재 신청 가능
- ④ 상품 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상품을 등록
(최초 상품 등록은 카페24 전담 진행 / 이후는 업체 동시진행)
- ⑤ 고객의 주문 내역을 확인 합니다
- ⑥ 배송 처리를 진행 합니다 (별도 프로세스 참고)
- ⑦ 정산 프로세스에 따라 정산 및 송금을 진행 합니다 (SBA 진행)
- ⑧ 송금 내역 및 최종 확인을 진행 합니다

5) 우선구매제도 사업아이템 개발과 홍보전략¹⁰⁾

가. 개요

■ 우선구매제도에 따른 사업아이템 개발·점검

-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조달정책 분석, 고객·지역사회 욕구분석, 경쟁분석
- 계획 : 조달정책,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면밀한 이해 → 현 보유 상품 비교·점검
- 실시 : 파생상품, 연관종목 찾기
- 사후 : 공공시장 내 추가 발굴 영역 모색

■ 사회적경제 차별화 전략

- 원가우위 : 노동효율, 새로운 공정, 디자인 변경, 표준화, 규모화, 원가절감. 원가절감 관리 시스템, 패키지 상품 또는 연계서비스
- 차별화 : 차별화는 최상의 마케팅 목표. 디자인, 신뢰감, 서비스, 배송 등에서의 우월성. 서비스 영역에서는 직원의 태도, 접근성, 전문성, 위치 등이 관련. 사회적경제의 차별화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성과 및 가치전략 정리. 일반기업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 집중화:하나의 지역, 세분시장 또는 한상품에 전력. 소비자와상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강점

■ 핵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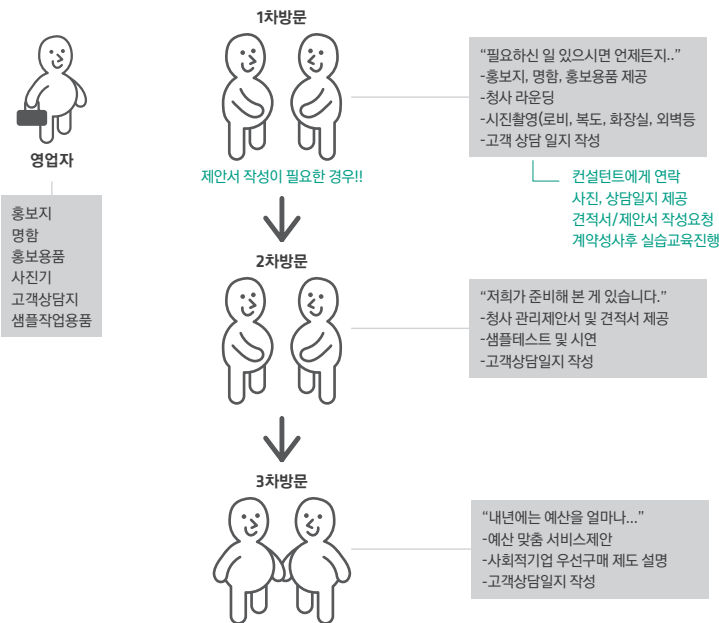
- 수익계약에 집중 : 관련 법률, 조례, 시행령 숙지
- 전문업체로 인정받기 : 전문성과 기술력에서 있어서 타업체와의 우위 확보 필수
- 업종개발 : 현 업종을 포함한 기타 업종, 파생업종 개발
- 지역홍보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홍보활동. 사회적경제의 차별성 부각
- 비전수립 : 회사를 알리는 데 3년, 영업성과를 내는 데 10년 소요

■ 사회적경제 인증효과(인증제도 운영 사회적경제 부문) 극대화

- 사회적경제 인증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
 - 지역사회 이해당사자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투명한 기업
 - 지속적인 이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 1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보고서'작성하여 배포
-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활용
 - 법인세 감면, 4대보험 기업주 부담금 면제
 -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
 - 정책자금 저이율(2-4%) 장기 대부 제도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위탁 실적 본격화

나. 세부사항

■ 공공기관 영업 프로세스



■ 공익연계 마케팅의 이해

●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

-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소비자 보호운동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데도 기업의 마케팅을 적용하게 됨.
- 소비자 생활의 질 향상, 빈곤감소,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인간자본 개발, 가족계획, 낙태, 금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룸.

● 사회지향적 마케팅(societal marketing)

- 기업이 소비자 운동단체나 정부의 압력에 대응하여 사회적 이슈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맥도날드가 맛이나 영양가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이나 환경까지 고려하여 마케팅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됨.

● 윤리마케팅(ethical marketing)

- 기업이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맞는 윤리기준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서 최종 고객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임.
- 그린마케팅, 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의 기부 활동을 통한 이미지 고취 등이 윤리마케팅과 관련된 활동에 속함.

■ 점검사항

- 기업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 공익연계 마케팅을 벌임으로써 해당 사회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적절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회적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 관심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기업의 핵심가치나 전략에 가장 잘 부합하는가?
- 혹은 기업이 마케팅 목표달성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상품과 강력하게 연계된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

3.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계약사례 ¹¹⁾

11) 함께일하는세상(주) 우선구매교육 자료 중 발췌

발주처	사업지역	용역명	기간	계약방식	참가자격	평가방식	기타
			금액(원)				
은평구	서울	2013년 은평구청사 청소용역	2013. 3. 1 ~ 2013. 12. 31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서울형 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직접생산증명서 (건축물 일반청소업) ④서울 소재	①입찰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80%)	
			258,568,200				
서대문구	서울	2013년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용역	2013. 3. 1 ~ 2013. 12. 31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예비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서울 소재 기업	①입찰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 (80%)	
		2012년 서대문구청사 청소용역	2012.01.01~ 2012.12.31(12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①입찰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80%)	
			260,033,000				
		2012년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용역	2012.01.01~ 2012.12.31(12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서울 소재 기업	①입찰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 (80%)	
부천시청	부천시	2012년 흥재천·불광천 정	2012.05.01~ 2012.10.31(6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직접생산확인증명	①입찰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80%)	①지역제한이 없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에 제한 ②기술 및 운영능력 검증에 한계, 사업의 지속성이 낮음
			94,344,258				
		공공청사 미화용역	2012.03.01~ 2013.02.28(12개월)	전자입찰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직접생산확인증명	전자입찰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 적용	
			257,373,600				
			714,951,600				
수원시청	수원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2012.06.01~ 2012.12.31(7개월)	공개경쟁	①수원시 소재 일반기업 ②수원시 소재 인중 및 예비 사회적기업 ③예치금 10억	수행능력 / 결격사유 / 인력 및 장비 / 차고지 / 경영능력 등 평가(100%)	예치금 10억 사전준비 등 거대 일반기업과 경쟁으로 실질적 사회적기업 참여 한계
			1,138,000,000				
		가사생활민원 서비스 사업	2012. 04. 01. ~ 2013. 01. 31.(10개월)	공개경쟁	①각 모집 분야별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를 각 1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단체·법인 기업 등	①정량적 평가(25점) -인력보유, 경영상태 등 ②정성적평가(75점) -사업수행능력, 인력관리 등	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부산/전라/경상	2011년도 한강수력본부 및 각 발전소 청소용역	2011.10.01~ 2012.09.30 (12개월)	전자입찰 (지명경쟁)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위생관리신고필 ④직접생산확인증명	①입찰가격평가(60%) ②기술능력 평가 등(40%)	
			985,000,000				
한국공항공사	서울	통합콜센터 운영업무 위탁관리 용역	2012.07.01 ~ 2014.12.31(총30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연간 단일계약 9억 이상 등 일반기업 입찰 자격기준	①가격평가(20%) ②기술능력 평가 등(80%)	기준업체의 입찰참여시 사회적기업의 참여 문구 포함
			2,426,232,364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	서울본부 전기동차 청소용역	2012.05.01 ~ 2014.03.31(총23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기타	①가격전자투찰(20%) ②기술제안서, 실적, 경영 상태 등(80%)	①규모가 큰 사업으로 실적점수 반영 등 1-2곳의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는 참여시 경쟁경쟁에 한계점 발생 ②사업범위의 배분 필요
			1,654,785,480				
	경기	수도권 서부본부 과천/안산선 역 청소용역	2012.06.01 ~ 2014.03.31(총22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중소기업자 ④직접생산확인증명	①가격전자투찰(20%) ②기술제안서, 실적, 경영 상태 등(80%)	
			4,623,479,975				
	서울/경기	서울본부 경의선 역 청소용역	2012.06.01 ~ 2014.03.31(총22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중소기업자 ④직접생산확인증명	①가격전자투찰(20%) ②기술제안서, 실적, 경영 상태 등(8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경기	수도권 동부본부 경춘선 철도역사 청소용역	2012.06.01 ~ 2014.03.31(총22개월)	협상에 의한 계약	①인중사회적기업 ②위생관리신고필 ③중소기업자 ④직접생산확인증명	①가격전자투찰(20%) ②기술제안서, 실적, 경영 상태 등(80%)	
			2,780,032,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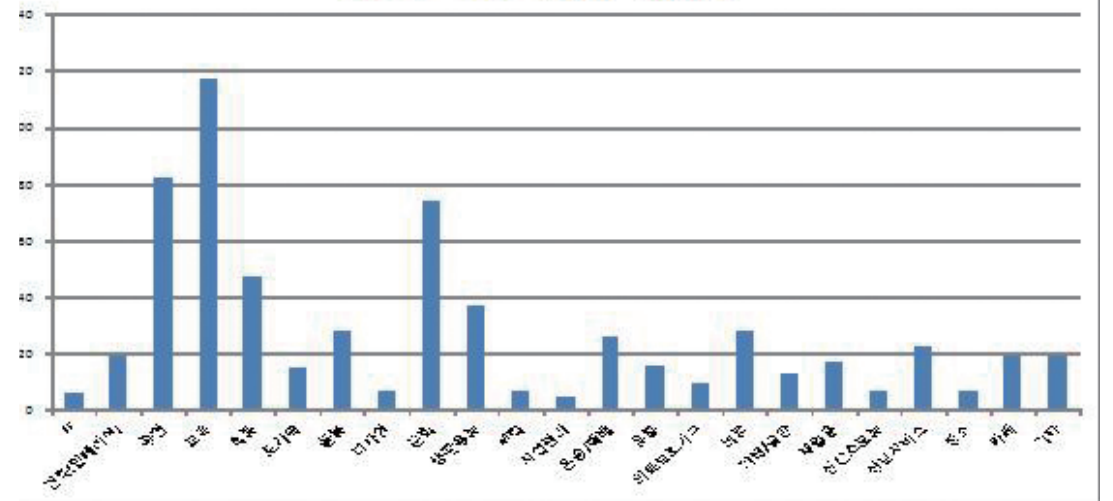
4. 첨부문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종별 분류
-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 실적 및 개선과제
- 공공조달 업무 흐름도
- 공공구매 관련 법규 정리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소개 (별첨)
- 2013년 서울시(본청, 자치구, 투출기관) 우선구매 가능 품목 상세
- 사파이어몰 매뉴얼
- 나라장터 이용 사용자 매뉴얼 (PDF 문서)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종별 분류]

업종	업체 수	주요 품목	비고
IT	6	컴퓨터/홈페이지 제작 등	
건축(인테리어)	19	집수리/보수	
공연	82	문화예술공연/행사기획	
교육	117	지역 및 청소년 교육/예술교육 등	
식품	47	친환경 식자재/공정무역 제품/제과제빵 등	
도시락	15	도시락 가공/배달	
돌봄	28	노인방문요양/요양서비스	
디자인	7	디자인지원/사회혁신 디자인	
문화	74	영화/방송/영상/여행 등	
생활용품	37	생활잡화	
세탁	7	세탁서비스	
시설관리	5	시설관리	
운송/택배	26	택배서비스/지하철택배/위탁배송	
유통	16	로컬푸드/농수산물/가공품 판매	
의료보조기구	10	의료용품 생산/보조기구 대여	
의류	28	친환경/공정무역 의류/작업복	
인쇄/출판	13	현수막/광고배너/책자/카드로그	
재활용	17	재활용품 선별 및 가공	
전산소모품	7	재생토너/LED 조명	
정보서비스	23	정보화 사업	
청소	7	건물청소/청소용역	
카페	19	친환경 식자재 사용/커뮤니티 카페	
기타	19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합계	629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현황



- 교육/공연/문화 분야 기업이 전체 43%(273개)의 비율로 서비스 품목에 강점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 실적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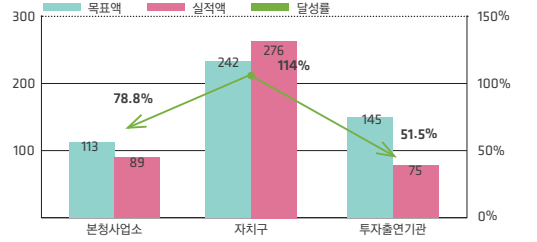
1. 공공구매 현황 및 문제점

● '12년 사회적기업 목표액 : 500억원, 실적액 : 440억원(88.0% 달성)

- 기관별 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목표액	실적액
계	265,136	500	440
본청 사업소	78,576	113	89
자치구	82,331	242	276
투자출연기관	104,229	145	75



※ 목표액을 '12년도는 예산액 대비 0.13~0.2%로 배분하였으나 '13년도에는 구매 예산대비 탄력적 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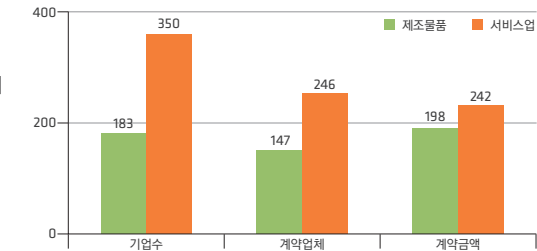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현황과 유형별 계약 실적

-서울지역 533개중 1회이상 구매가 이루어진 기업 390개(73.1%)

-사회적기업은 제조·물품업과 서비스업이 3: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나 계

약금액은 물품·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5의 비율로 거의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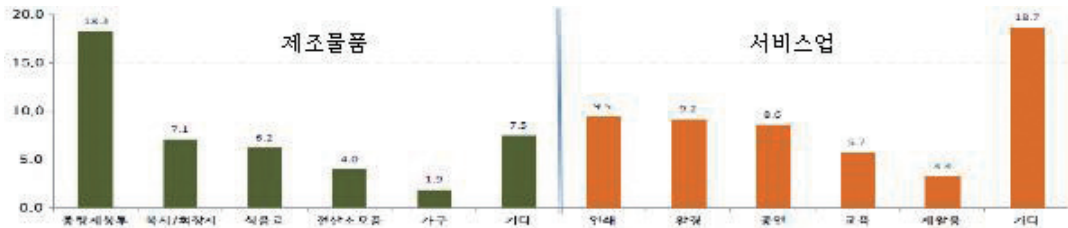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 공공구매 주요 품목별 현황

구 분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건수	19,613건 (100.0%)	19,246건 (98.1%)	332건 (1.7%)	35건 (0.2%)
금액	440억 (100.0%)	244억 (55.4%)	120억 (27.3%)	76억 (17.3%)

-사회적기업 거래 실적 : 총 390개 기업 계약 19,613건, 440억원중 상위 20개 기업 계약 8,532건(43.5%), 230억원(52.3%)



-종량제 봉투, 복사/화장지, 인쇄, 환경 등 특정품목(73.8%), 2천만원 미만 소액 구매(98.1%) 위주의 공공구매 진행

→ 공공구매 품목 다양화, 1억원이상 단독인찰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기업 역량제고와

「일정금액이상 계약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간접구매 제도 지원」 필요

● 기관별 및 사회적 기업별 거래 실적

-기관별 상위 5개 기관의 총 구매 실적 214억원(전체 실적의 48.6%)

순위	본청 사업소 (44.9%)		자치구 (41.3%)		투자출연기관 (78.6%)	
	기관명	구매액(천원)	기관명	구매액(천원)	기관명	구매액(천원)
1	문화예술과	1,428,099	마포구	3,248,954	SH공사	2,136,971
2	사회적경제과	992,295	영등포구	2,428,494	농수산물공사	1,140,312
3	상수도사업본부	767,528	노원구	2,245,607	서울메트로	947,401
4	서울역사박물관	531,779	관악구	1,801,38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843,155
5	정보통신담당관	365,254	성북구	1,717,128	시설관리공단	834,816

-사회적기업 거래 실적 : 총 390개 기업 계약 19,613건, 440억원중 상위 20개 기업 계약 8,532건(43.5%), 230억원(52.3%)

	거래처명	생산품목	건수	금액(천원)
1	사회복지법인 A	종량제봉투, 인쇄물, 친환경경제, 세정제, 폴리에틸렌필름	929	7,808,017
2	B 기업	집수리,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위생관리	191	1,825,524
3	C 기업	체험형 교육연극 공연사업	12	1,711,105
4	(사) D	디자인, 출판, 복사용지, 직업재활, 보호고용훈련	2,696	1,591,503
5	E 센터	인큐베이팅	8	1,227,720
6	사회복지법인 F	LED조명 모듈 사업, CCTV, USB 제조	74	1,068,776
7	G 기업	프린터 리본/재생카드리지 생산, 손세정제, 핸드크림 등 생산	1,148	727,018
8	사회복지법인 H	가구류	26	651,447
9	(사) I	인쇄물제작	149	635,193
10	J 기업	신문활용	15	620,897
11	(사) K	농수축산물	149	586,730
12	L 기업	농수산물	1,374	565,255
13	M 기업	유지컬	15	554,521
14	(사) O	인쇄, 복사용지, 화장지	765	540,542
15	P 기업	브로슈어, 카달로그, 달력, 명함	147	539,962
16	Q 기업	조경, 식재공사	40	502,770
17	R 기업	토너 카트리지 제조 판매, 폐자원 활용 비철금속 추출사업	608	475,619
18	S 기업	기타(재활용쓰레기선별)	13	463,948
19	T 기업	시설개보수, 인테리어	171	456,952
20	W 본부	자기주도학습, 강사양성 및 파견사업	2	423,312

2. 향후 추진계획

1) 수요공급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공공구매지원센터 설립(서울사회적기업개발센터내)

- 공공기관의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계약관련 연구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대상 공공기관 계약방법 매뉴얼 제작과 교육 등

2) 서울시 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 공개

- 방법 및 시기 : 서울시 및 서울사회적기업 개발센터 홈페이지, '13. 2월말(예정)

- 내 용 :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2013년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시기, 내역, 금액 등

3) 의무 또는 간접 구매 제도적 지원 마련

- 의무 구매 비율 지정 마련 예) 서대문구청 청사 및 동 뒷골목 청소용역 :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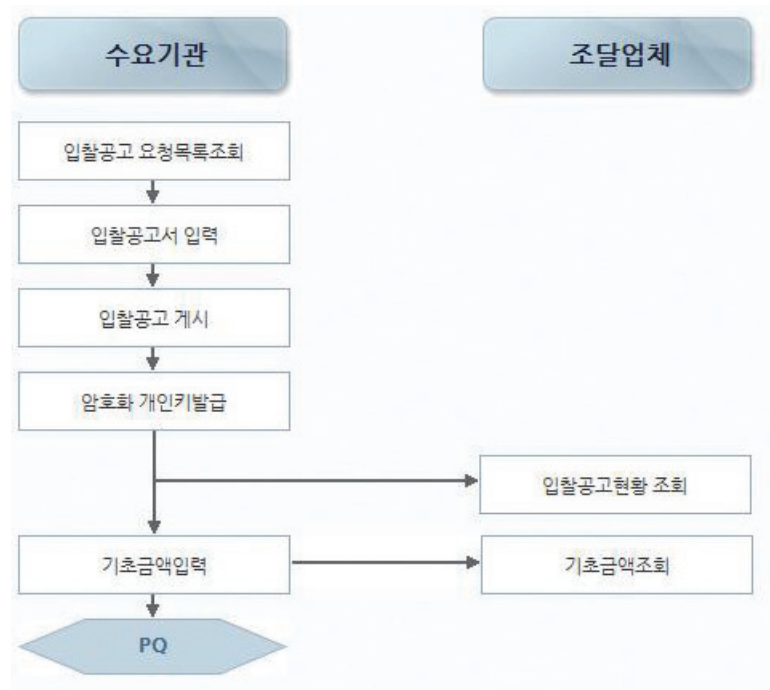
- 대형공사시 필요한 각종 물품 또는 자재 간접 구매 의무화 예) 건물증축시 인부들의 작업복, 장갑 등의 구매

[공공조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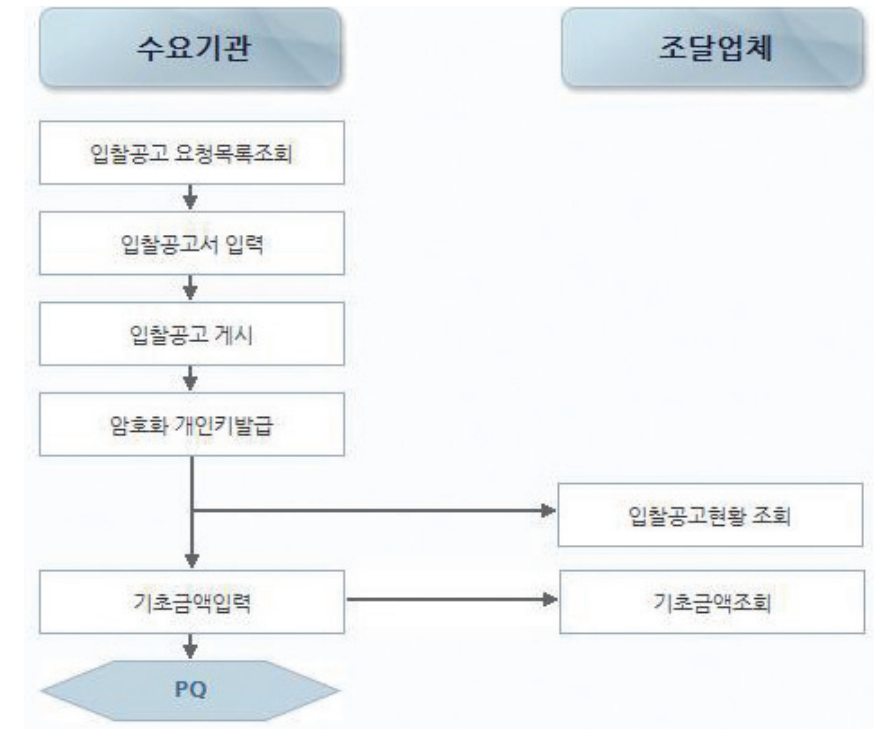
1. 물품구매 입찰공고



2. 시설공사 입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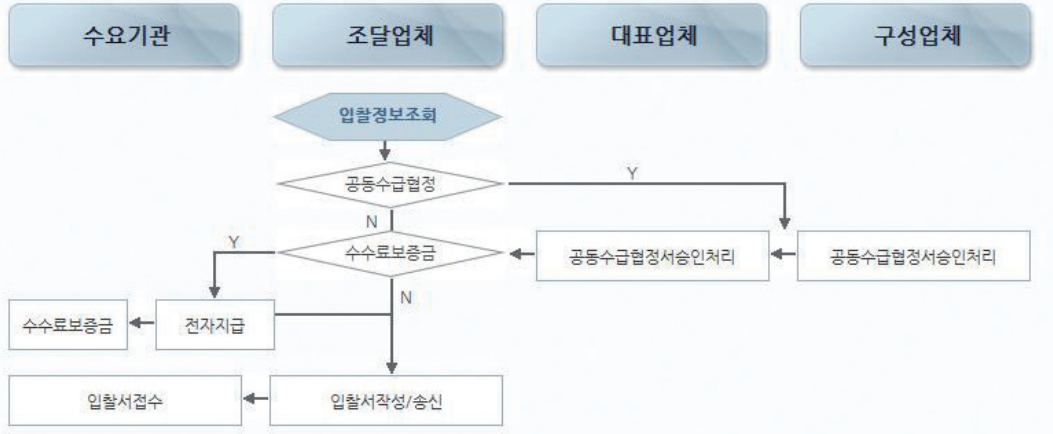
3. 용역 입찰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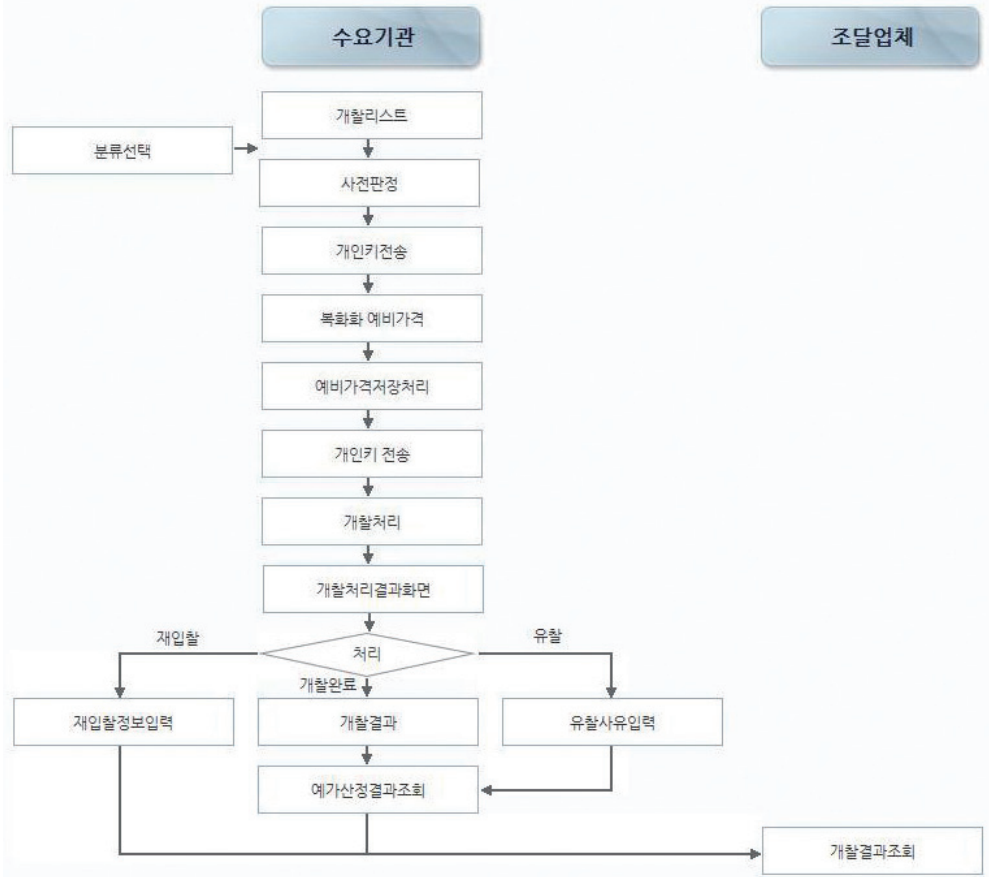
4. 예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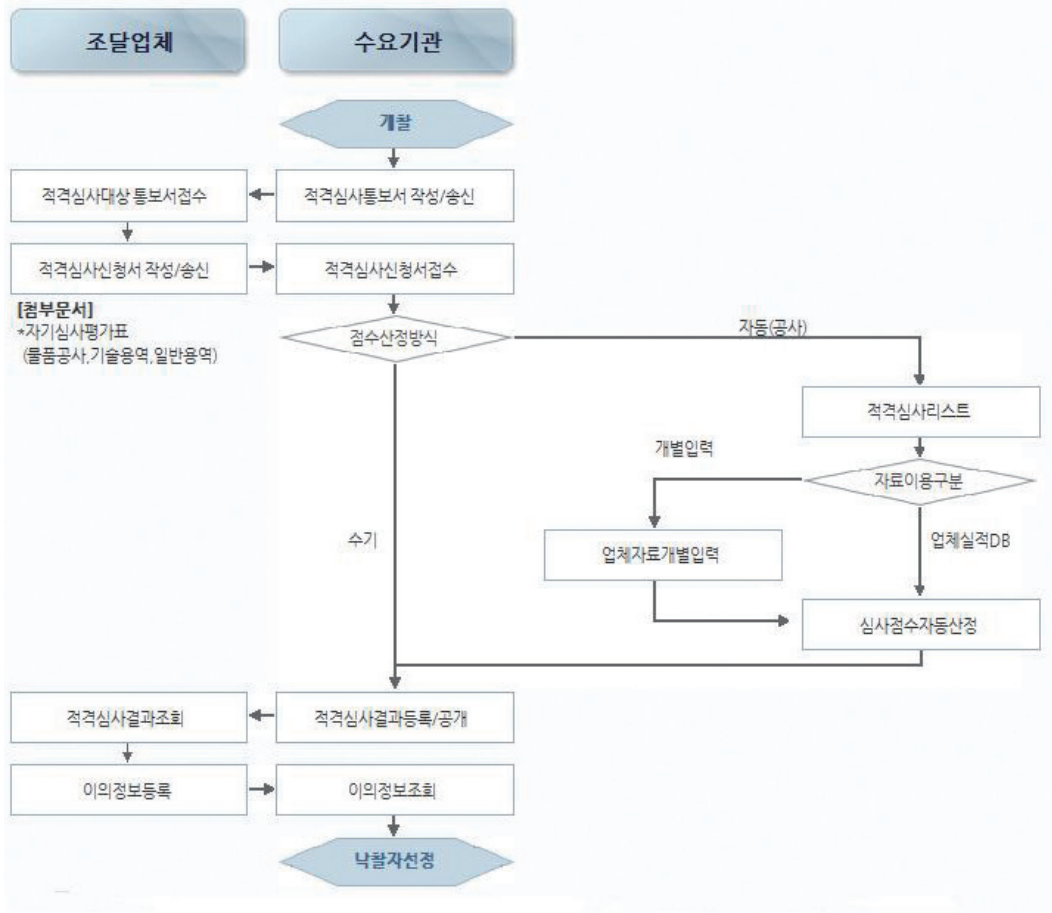
5. 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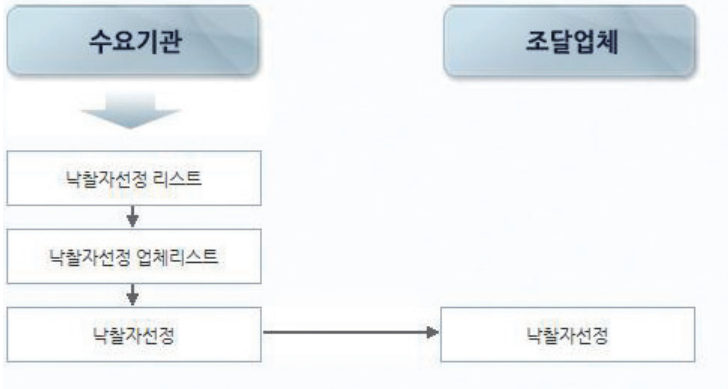
6. 개찰



7. 적격심사



8. 낙찰자 선정



[공공구매 관련 법규 정리]

조달청 의무 구매 대상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의3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계약체결방법 관련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다음 각 목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 26조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다.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영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을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6>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자에 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법규와 유사한 체제로 상세 내용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

지명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훈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 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5. 지명대상자의 업체 현황 6.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법규와 유사한 체제로 상세 내용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장
--

수의계약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기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요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울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요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을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하 조항 생략)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법규와 유사한 체제로 상세 내용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기획재정부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낙찰자 결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48조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법규와 유사한 체제로 상세 내용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등 기획재정부 예규 중 4. 적격심사기준,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사회적기업개발센터 소개]

서울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오는 3월 서울시 은평구에 협업 공간(co-working space)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서울의 사회적 경제 허브로 기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센터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공동체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자활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의 사회적 경제 부문별 협의체, 기초 자치구별 지원조직 및 민간 지원조직 간의 연대와 협동 허브로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조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출범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서울시정, 시민, 기업의 사회 책임 이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중심의 사회/경제와 보편적 시민복지사회 형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민관의 협력적 연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4개월 간 민관 협력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단'이 운영되었고, 그 산물로 '서울시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자조 역량 강화와 센터 자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민사회 협동 촉진을 통한 공유 자원 확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기업/연구소/전문가 등 섹터 간 자원 연계를 통한 혁신 인프라 확충, 자치구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온-오프라인 사회적 경제 허브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공공구매 영역에 사회책임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의 기초 시장을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 영역 혁신,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 제공, 소셜 프랜차이징을 통한 사회변화창출력 확대, 사회투자자금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및 시행,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충, 공감대 형성
- 증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로 신뢰도 제고: 사회적 경제 정책 연구, 사회가치지표 개발 및 성과 집계, 서울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과제 연구 수행, 통계 시스템 구축/관리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SSEN, Seoul Social Economy Network)는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조직 및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여 2012년 5월에 결성한 사단법인임. 호혜와 연대의 가치로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과 혁신의 가치로 공동의 의제를 만들고 실천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서울시로 부터 '서울시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위탁 운영중임.

[별첨]

- 2013년 서울시(본청,자치구,투출기관) 우선구매 가능 품목 상세
- 사파이어몰 매뉴얼
- 나라장터 이용 사용자 매뉴얼 (PDF 문서)